

01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

- I.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II. 「화학물질 관리법」 개요
- III.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이행지원 대책

I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화학물질은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나, 분해과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매체별 확산이 가능하며 미량 만으로도 그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해성정보를 잘 모르고 사용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PHMG*⁰¹, PGH**⁰² 등의 화학물질이 최초로 출시되어, 그 유해성 정보가 알려지지않은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폐손상 유발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8천8백만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12만종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다양한 제품에 함유되어 화학제품으로 제조되는데,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관리체계로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2007년 6월에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 4월에는 일본이 「화학물질 신고

01 PHMG(phosphate);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카펫트·플라스틱 향균제, 수처리제, 섬유유연제 등으로 사용

02 PGH(Poly[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hydrochloride), 섬유제품·음식물 포장재 향균제 등으로 사용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을 EU와 유사한 체계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제 화학물질 교역시장에서는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금지)'이 공고한 원칙으로 자리매김 하게되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화학물질 위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유해성⁰³·위해성⁰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나아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생활용제품과 Biocide까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법률이다.

환경부는 2012년 9월에 EU REACH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마련하였다.

●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보고·등록 제도]

기업들이 이행해야 하는 제도는 매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현황을 제출하는 '보고 제도'와 화학물질의 용도, 특성, 유해성·위해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는 '등록제도'로 크게 구분되는데, 특히, 등록제도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학물질의 정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안전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제도이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유해성심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없었으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등록 및 유해성심사 대상을 신규화학물질에서 기존화학물질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대상 역시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서 모든 신규 화학물질로 확대하였다.

03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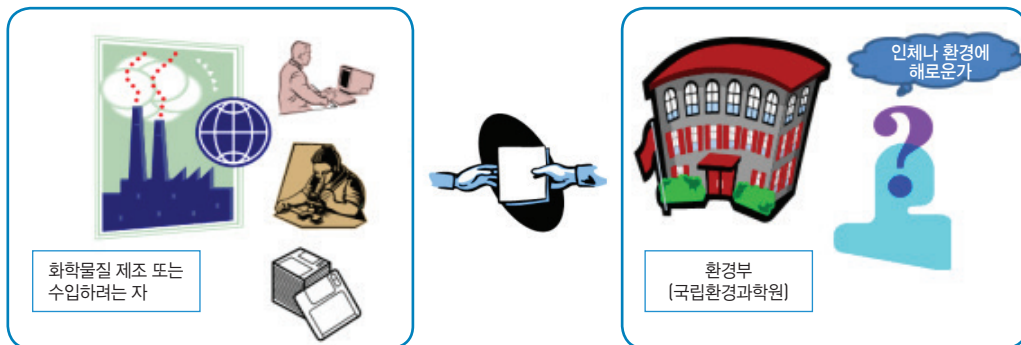
04 위해성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또한, 동 법에서는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EU REACH와 동일한 등록신청절차로 개편하였는데, 화학물질의 등록절차와 심사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신청한 때부터 30일 이내(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3~7일) 등록완료의 결정통지를 하도록 하여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60일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아울러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중에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유해성평가, 노출평가, 안전성확인 등의 순으로 작성·제출토록 하였다. 나아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QSAR03⁰⁵ 등)에는 해당 시험자료를 생략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과 연계하여 시험자료를 대신한 시험계획서의 대체 제출을 인정하였다.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정부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정성과 신뢰성을 심사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성질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유해성심사)한다. 기업이 등록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정부 자체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유해성평가)하기도 하는데, 국외로 전량 수출되는 화학물질,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 또는 국내외 화학물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대한 노출평가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된 위해도를 도출(위해성평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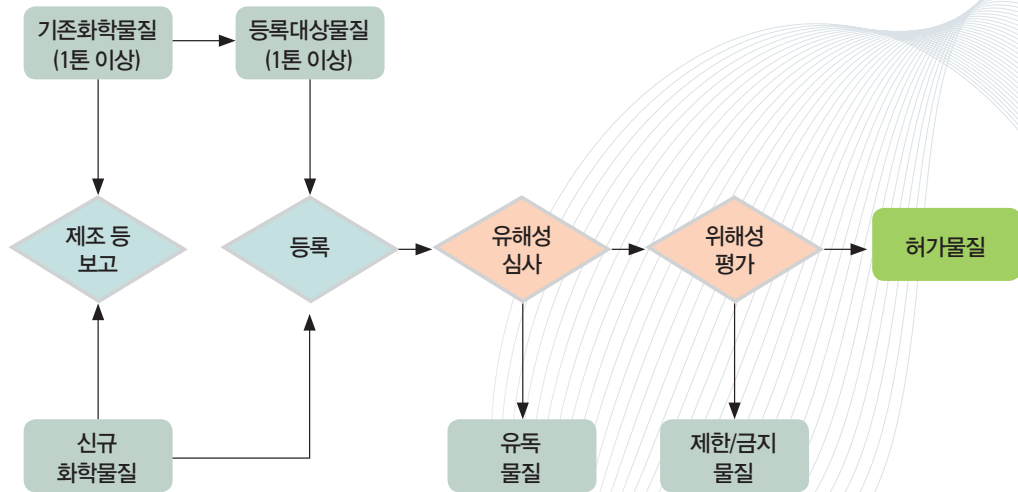
05 QSAR :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models)

[유해화학물질의 지정]

정부는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를 거쳐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유독 물질로 지정하고, 위해성평가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특히 허가물질의 경우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체물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렇게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에 대한 관리와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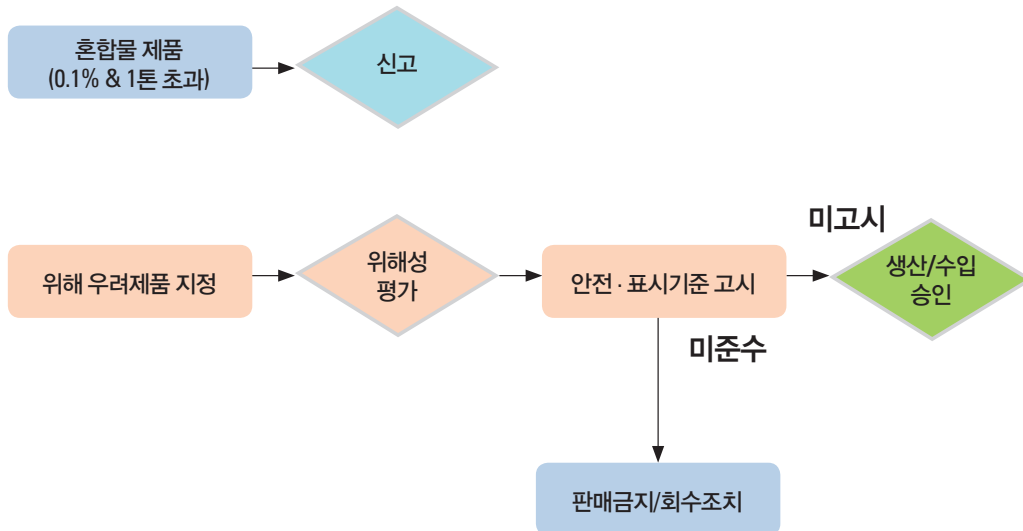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설정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 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화학제품에는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생활용제품)과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과 같이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살생물제품)들이 포함된다.

품목별로 위해우려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노출평가, 위해도 도출 등)를 거쳐서 안전·표시기준을 설정하는데,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등이 고시되면 해당 화학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유통시켜야 한다.

[화평법상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화학물질· 함유제품 정보의 공유· 공개]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심사· 평가결과들은 사회전체적으로 공유되어 사업장 근로자나 일반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당 화학물질·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등록된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양도할 때에는 유· 위해성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의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하위사용자· 판매자와 제조· 수입자 상호간에도 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양,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도 함유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심사· 평가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 운영될 예정인 ‘정보처리시스템(IT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 ● 향후전망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제도 전과정의 이행·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15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 정보에 관한 IT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총 53억원 예산소요)이고, 국내 환경유해성 분야의 시험기반 구축과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매년 약 20억원 소요)에 있다. 또한, 다부처 공동 R&D사업으로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화학공정· 배출저감 기술 개발 등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제도 이행 역량이 제도 정착의 성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법 시행 초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9억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제도 이행 지원, 위해성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의무 이행, 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준수 등의 이행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마다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기반한 관리가 정착됨으로써 녹색화학(Green-Chemistry)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자체 개발능력이 향상되어 고부가가치·고기능성의 화학물질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고, 화학물질 정보관리 서비스업 등과 같은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관련 전문분야 일자리가 확대됨은 물론,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화학규제 대응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화학물질 관리법」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배경

2012년 9월 27일, 노동자 5명 사망, 인근 주민 1만여명 병원 치료, 212헥타르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등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사에 기록적인 피해를 야기한 휴브 글로벌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반도체 공정 생산라인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 8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도 최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무수불산 사고 등 현재까지 총 8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주로 사업장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로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사고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41개 국가산단과 503개 지방산단 중 각각 22%, 12%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법」은 이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서 2015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체계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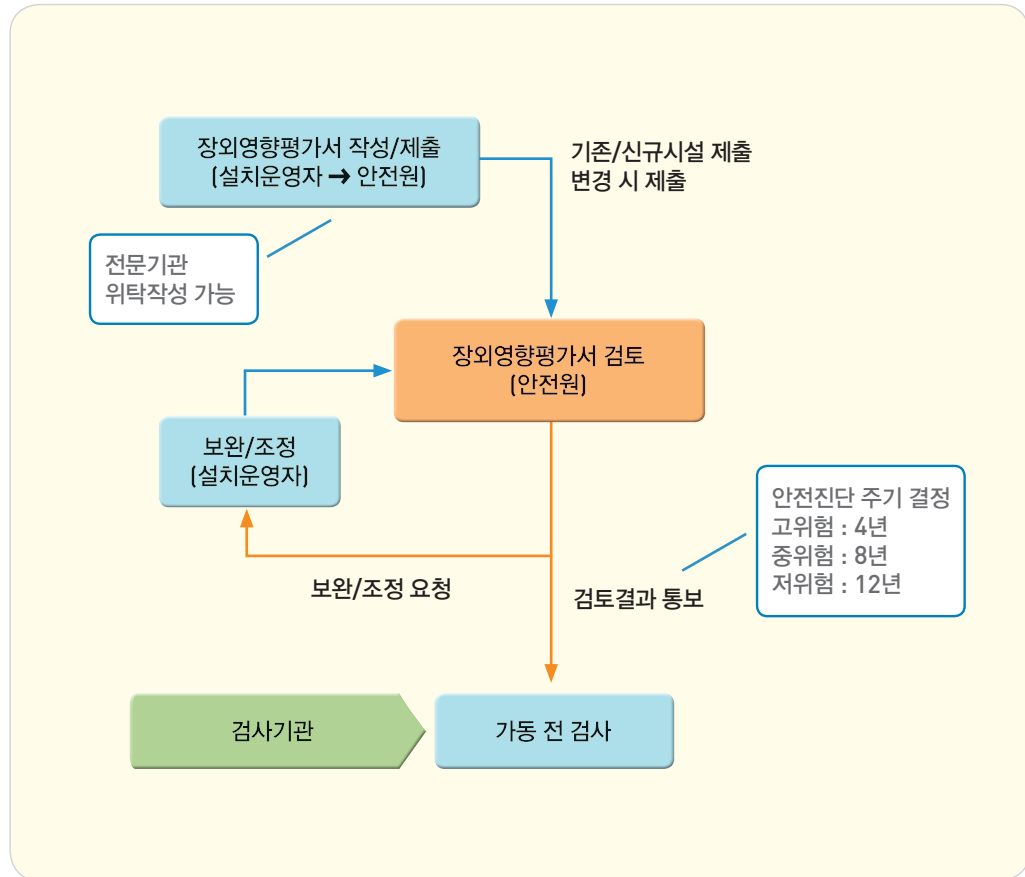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영업은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지방(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간 포괄적이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과 시설기준은 물질별 취급기준과 시설 종류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한층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자가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중, 삼중의 안전개념에 따라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게 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가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시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한 후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 사업장이면 중복 부분을 사본제출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신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하여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제출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유예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절차 체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안전 강화]

또한, 그동안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를 전문 검사기관에서 철저하게 검사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하도록 했다. 그밖에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외에도 장외영향평가결과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은 4년, 중위험은 8년, 저위험은 1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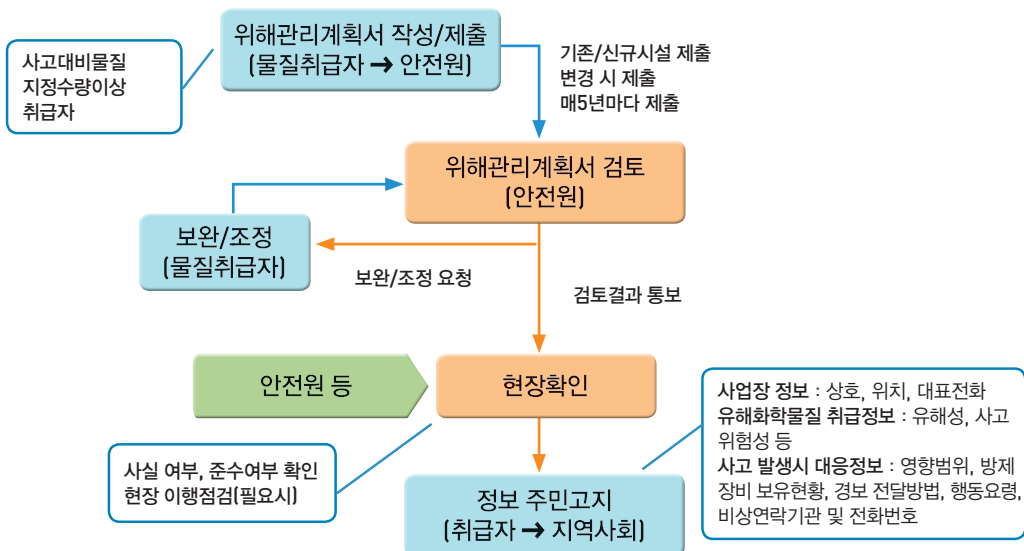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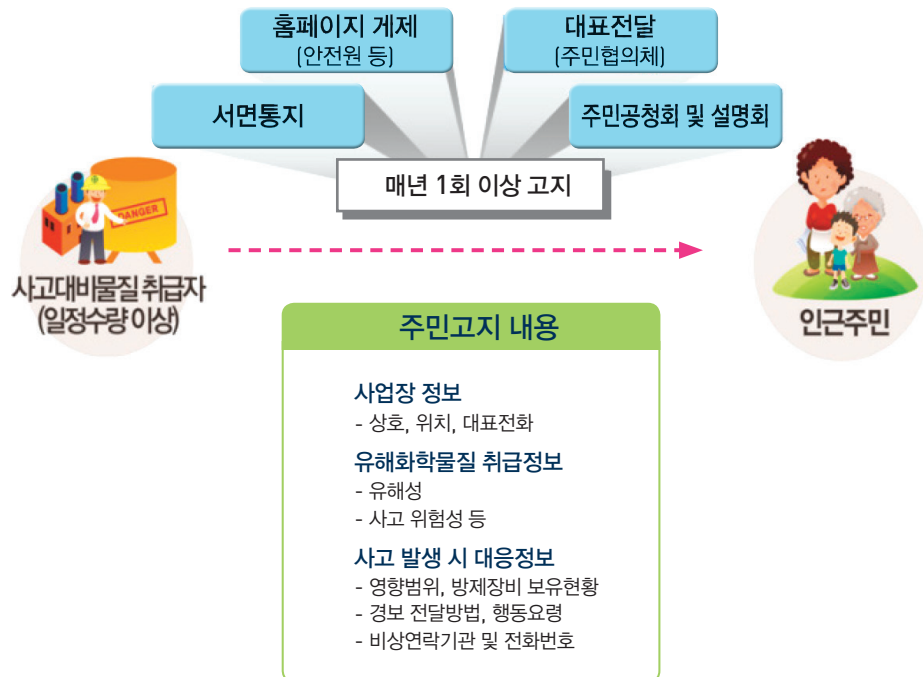
[위해관리계획 수립]

기존에 한정적으로만 운영되던 자체방제계획제도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라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 유출시나리오,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장외영향평가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제출 대상 사업장이면 중복 부분을 사본제출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 등에 따라 제출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유예하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절차 체계도]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자는 이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사고 발생시 대응정보 등을 지역 주민에게 서면통지, 집합전달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사고예방·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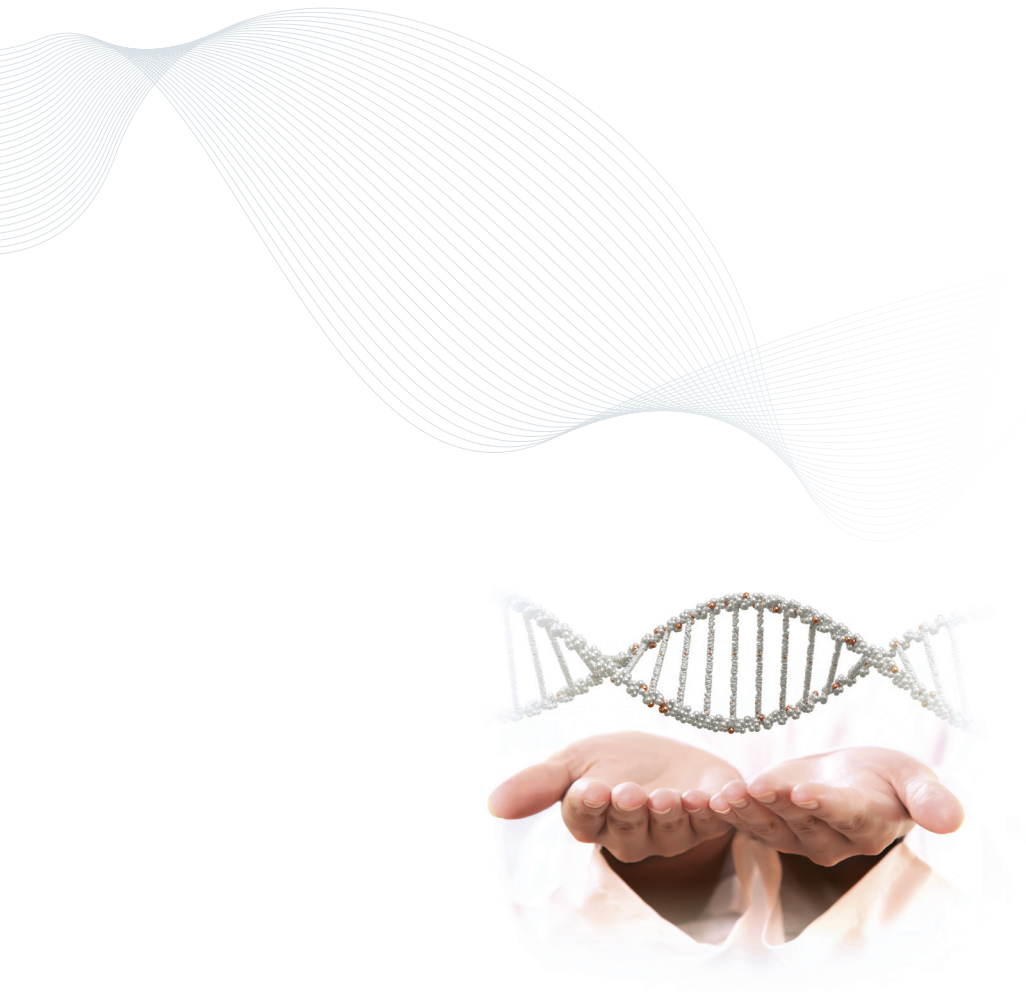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편]

개정법은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즉시 신고하고, 위해관리 계획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시 현장에 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전문적인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화학사고 원인규명, 피해사항 등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 사업자에게 피해최소화 및 복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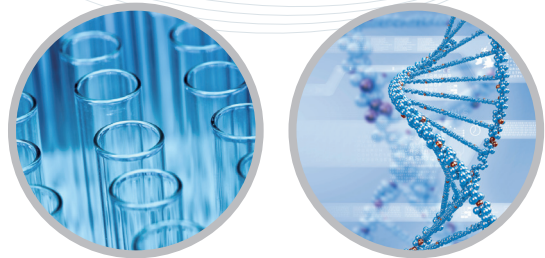
● ● 향후전망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공포('13.6.4) 이후 화학전문요원의 사고현장 도착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48분으로 단축되고, 취약업체의 비율도 38%에서 29%로 줄어드는 등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이 현장에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제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과 전문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 정착이 가속화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줄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이행지원 대책



● ● 화학안전 전문성 강화

(중소기업 1:1 맞춤형 현장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15.1.1)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산업계의 이행 의무가 확대되었다. 정부는 법령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부족하여 제도이행 준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 규모의 업체가 많은 윤활유, 페인트·잉크, 염료·안료, 계면활성제 등 4개 업종과 종업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보내어 업체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물질특성 등을 파악하고 규제대상 여부와 화학물질의 등록·보고·허가 등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스스로 화학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지원 대상 업종과 업체를 확대하여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 1:1 현장지원 내용 및 절차



[중소기업 화학물질 공동등록 지원]

화평법이 시행되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등록해본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여러 기업이 하나의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별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제출서류 준비 등 공동등록 수 과정에 대한 이행 지원을 통해 협의체 스스로 공동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4종의 상세안내서('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안내서',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별 · 업종별 화학법령 교육 지원]

「화평법」, 「화관법」의 본격 시행('15.1.1)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화학물질의 보고 · 등록,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등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

하며 지역별·업종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학법령에 대한 전문교육과 애로사항 등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전국 19개 지방 산업도시를 순회하며 총 1,565개 업체 2,247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14.11~12)에는 전국 11개 도시 3,30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및 화학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www.chemnavi.or.kr, 문의 : 02-6050-1304~1308)

● ● 시설개선 및 사고대응역량 제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기술 지원)

연이은 화학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3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까지 노후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보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진단내용을 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과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하면 추후 각 지방환경관서에서 시설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화학사고 위협요인에 대한 컨설팅과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현장진단에서부터 시설개선 및 사후 관리까지 쉼 과정을 지원한다.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 체계 강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차원의 위기 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간하여 화학안전 유관기관(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매뉴얼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 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업체와 지방환경관서,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 사이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합동모의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제상황에서 사고대응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 소방, 경찰 등 화학사고 대응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실무 및 행동매뉴얼 작성 시 주민통보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지원]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 물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의 독성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세 중소기업들의 시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중소기업에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설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 보관·저장, 운반 등)을 개선 또는 설치해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보조금·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설비를 개선하는 경우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까지 총 5조원의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화학기업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지원 하고 있다.

구 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보 조	개선비용의 최대 70% 업체당 2천만원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www.geca.or.kr (02-357-4401)
융 자	업체당 10억원 고정금리 2.46%('14.4/4분기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loan.keiti.re.kr (02-3800-252~260)
펀 드	5조원(산은 2.5조, 기은 2.5조), 금리 1%p 감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전국 각 지점

환경정책

Briefs

